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관 련 번호 1150

제 안 연월일 : 2016년 6월 21일 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간을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시의회에서 안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 시, 그 삭제된 건은 내용에 변경이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도록 수정함(안 제11조 제3항).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1조제3항 중 "1년" 을 "6개월"로 한다.

<u>수정안 조문 대비표</u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1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	제11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	제11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
① <u>시장은</u> 시의회에서 예	① <u>시장은</u> 투자심사 및	① <u>시장은</u> 투자심사 및
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	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	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
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	차 이행 이후	<u>차 이행 이후</u>
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		
야 한다. 공유재산 관리		
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		
한 같다.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② (현행과 같음)
<u>〈신 설〉</u>	③ 시의회에서 안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 하여 수정 의결 시, 그 삭제된 건은 내용에 변 경이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1년 이 내에 재상정할 수 없 다.	③ 시의회에서 안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 시, 그 삭제된 건은 내용에 변경이 있지 아니한 경우의결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.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중 "시장은"을 "시장은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이후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③ 시의회에서 안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 시, 그 삭제된 건은 내용에 변경이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	제11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<u>시장은</u>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이후
〈신 설〉	③ 시의회에서 안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 시, 그 삭제된 건은 내용에 변경이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다.